

심 사 보 고 서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31
----------	-----

2023. 7. 21.(금)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일자: 2023년 7월 4일

다. 회부일자: 2023년 7월 5일

라. 상정일자: 2023년 7월 13일

(제4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행정국장 홍만표)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① 재산의 취득

(단위: m², 천원)

기관명	사 업 명	구분	수 량	취득금액	담당부서	비고
충청북도 교육청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건 물	1,548.00	8,238,003	음 성 교육지원청	
합 계(1건)		토 지	0	0		
		건 물	1,548.00	8,238,003		
		계	1,548.00	8,238,003		

② 재산의 처분

(단위: m², 천원)

기관명	사 업 명	구분	수 량	처분금액 (대장가격)	담당부서	비고
충청북도 교육청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토 지	9,426.00	41,340	영 동 교육지원청	
		건 물	769.35	117,401		
		소 계	10,195.35	158,741		
합 계(1건)		토 지	9,426.00	41,340		
		건 물	769.35	117,401		
		계	10,195.35	158,741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영균)

-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는 교육청 업무가 늘어나고 세분화, 다양해 지면서 사무실 공간 확충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전용회의실 확보,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공간 확보에 관한 것임
- 사업규모는 건물(증축) 1,548m², 건물(보수) 972.89m²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3실, 학교폭력심의회의실 및 상담실 3실, 대회의실 3실, 화장실 3.5실, 창고 1실, 휴게실 2실이며 청사 리모델링으로 이중창 교체,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석면 교체하는 것으로 취득 금액은 82억 3,800만 3천원 임

- 청사 증축은 본관 좌측면 주차장에 3층 규모 증축으로 청사 부지내 자체용지며, 사업비는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시설사업비 예산 단가 적용으로 사업규모 및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됨¹⁾
- 협소한 사무실, 회의실 공간과 화장실 부족을 개선하므로 교직원의 근무환경이 좋아지고 업무 능률도 증대되며, 학교폭력대책 심의 및 교육지원청의 각종 민원 업무로 교육청을 찾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도 향상 될 것으로 기대 됨
- 다만, 건축물 기준내용연수인 40년²⁾을 초과하여 45년(1977.12.)이 된 청사에 증축 및 보수를 위하여 82억 예산 투입 대비 개축 및 신축과 비교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기존 주차장에 청사를 증축하는 것으로 주차공간이 기존 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확보가 필요해 보임
- 상촌초 대해폐교는 1991년 폐교되어 32년이 경과되었으며,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약칭:폐교활용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영동군에 매각하려는 것임
-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은 토지 5필지 9,426㎡, 건물 9동 769.35㎡를 영동군에서 백두대간 산촌 문화 보존 및 계승을 위한 산촌 문화마을 조성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 원하는 것으로 기준가격 2억 974만 2천원에(토지 공시지가 126,830천원, 건물 시가표준액 82,912천원) 매각 처분 계획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아래 <참고 자료 1> 참조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기준 40년 (하한 30년, 상한 50년)

참고 자료 1

□ 타 시도 교육지원청 공공건축물 공사비 비교 검토자료

지역	사업명	사업 규모	준공 [예정] 일	공사비 [용역비 제외]	면적	㎡ 당 공사비 [평당 단가]	비고
음성	청사 증축 및 보수	지상 3층	2025년	7,542,664 천원	1,548㎡ (469평)	4,872천원/㎡ (16,082천원/평)	2021년 기준 물가 상승률 비교 대비 평당 단가 4,395천원/㎡ (14,506천원/평)
예천	청사 및 도서관 개축	지하 1층 지상 4층	2023년	22,287,730 천원	6,483.81㎡ (1,962평)	3,437천원/㎡ (11,359천원/평)	2021년 예산 편성
봉화	청사 이전 신축	지하 1층 지상 3층	2023년	8,587,749 천원	3,000㎡ (908평)	2,862천원/㎡ (9,457천원/평)	2021년 예산 편성

참고 자료 2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3. 20.>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건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건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부속설비에는 해당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건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할 때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대형점용 건물(해당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건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 할 수 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m², 식, 천원)

구 분		기정계획			변경계획			합 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취득합계	23	128,298.50	314,788,961	1	1,548.00	8,238,003	24	129,846.50	323,026,964
	계	토지	3	43,631.40	25,388,486			3	43,631.40	25,388,486
		건물	20	84,667.10	289,400,475	1	1,548.00	21	86,215.10	297,638,478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토지	3	43,631.40	25,388,486			3	43,631.40	25,388,486
		건물	20	84,667.10	289,400,475	1	1,548.00	21	86,215.10	297,638,478
		기타								
처분	처분합계	5	29,722.05	1,913,832	2	10,195.35	158,741	7	39,917.40	2,072,573
	계	토지	2	25,399.00	192,174	1	9,426.00	3	34,825.00	233,514
		건물	3	4,323.05	1,721,658	1	769.35	4	5,092.40	1,839,059
		기타								
	4. 매각	토지	2	25,399.00	192,174			2	25,399.00	192,174
		건물	2	2,474.35	625,499			2	2,474.35	625,499
		기타								
	5. 교환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	토지			1	9,426.00	41,340	1	9,426.00	41,340
		건물	1	1,848.70	1,096,159	1	769.35	2	2,618.05	1,213,560
		기타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른 관리계획상 “1건”의 의미가 아니라 구분(토지, 건물 등)에 따른 건수임

2. 취득대상 재산 목록

(단위: m², 천 원)

재 산 의 표 시				취득금액	취득 시기	취득 사유	비고
기관명	소재지	구분	수량				
음성교육지원청	음성군 음성읍내리 467	건 물	1,548.00	8,238,003	2025. 하반기	사무 및 회의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	도면 1
합 계(1건)		토 지	0	0			
		건 물	1,548.00	8,238,003			
		계	1,548.00	8,238,003			

①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① 사업위치: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67

② 주요내용

- 사업목적
 - 교육수요자 및 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 능력 향상 및 민원 만족도 제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적정한 심의 절차 수행을 위한 공간 확충
- 사업용도: 사무 및 회의 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
- 사업기간: 2023. 11. ~ 2025. 10.
- 소요예산(총사업비): 8,238,003천원
 - 연도별소요액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예산액	0	410,553	7,827,450	8,238,003

- 재원별사업비

(단위: 천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교부금	일반회계(시·군)	자체	소계	
건물	8,238,003	0	0	0	8,238,003	8,238,003	

-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공사비	벽체단열(화강석)	실	16	26,706	427,296
	준불연단열재보강	실	16	2,592	41,472
	건물외벽배선정리	실	16	1,579	25,264
	창호교체	실	10	24,762	247,620
	선홈통교체	m	84	120	10,080

구 분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방화셔터설치	개소	2	10,894	21,788
	석면천장철거	m ²	700	81	56,700
	석면천장교체(최상층)	m ²	355	203	72,065
	석면천장교체(기준층)	m ²	355	151	53,605
	창측 전등제어	실	5	713	3,565
	비산농도측정	m ²	700	3	2,100
	청소비	실	8	516	4,128
	집기이전	실	8	627	5,016
	계단난간교체	실	2	4,223	8,446
	냉난방시설	대	13	7,648	99,424
	환기시설(바닥형)	실	9	5,516	49,644
	신재생에너지(태양광)	kw	54	4,674	252,396
	소방감지기 등	실	9	892	8,028
	스피커 및 유니트교체	실	9	1,133	10,197
	인입선, 분전반 보수	실	9	1,573	14,157
	바닥교체(비닐계타일)	실	4	7,416	29,664
	중간벽설치	개소	3	5,250	15,750
	출입문교체	개소	5	7,546	37,730
	내벽보수	실	4	16,291	65,164
	내진보강	식	1	127,259	127,259
	화장실 증축	실	3.5	149,315	522,603
	계단실 증축	실	2.5	145,550	363,875
	승강기 시설	개소	1	191,842	191,842
	사무실 증축	실	3	153,995	461,985
	대회의실 증축	실	3	153,995	461,985
	학폭소회의실 및 상담실	실	3	153,995	461,985
	공용공간	실	2.45	153,995	377,288

구 분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1층부출입구, 2층건물입구	실	1	153,995	153,995
	기계실 증축	실	0.5	153,995	76,997
	냉난방시설	실	15	7,648	114,720
	환기시설	실	15	5,516	82,740
	물탱크설치(15톤)	식	1	16,848	16,848
	기초보강비	본	150	1,237	185,550
	1층 횡증축	실	5	23,196	115,980
	방송설비	식	1	67,751	67,751
	영상장비 및 네트워크장비	식	1	21,000	21,000
	무대장치, 커튼	식	1	100,583	100,583
	신재생에너지(태양광)	kw	95	4,674	444,030
	전기용량 증설	식	1	31,500	31,500
	통신망분리	m ²	1,548	19.95	30,882
	수신기 교체	식	1	10,500	10,500
	전기인입비	식	1	73,500	73,500
	관사철거	실	1.2	23,578	28,294
	창고철거	실	0.3	23,578	7,073
	배수로	m	200	386	77,200
	포장 및 조정 철거	식	1	20,000	20,000
	폐기물처리	식	1	15,000	15,000
	포장(아스콘)	m ²	3,870	83	321,210
	정문	개소	1	40,005	40,005
	조정시설	식	1	25,000	25,000
	제로에너지건축물 시스템 구축	식	1	157,500	157,500
	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	식	1	52,500	52,500
	우수,오수,상수	m	100	329	32,900
	가설웬스	m	120	67	8,040

구 분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2024년 시설비 증액(5%)	식	1	342,071	342,071
	2025년 시설비 증액(5%)	식	1	359,174	359,174
	소 계				7,542,664
용역비	기본설시설계비	식	1	353,837	353,837
	내진보강구조설계비	식	1	19,393	19,393
	설계공모제작보상비	식	1	37,323	37,323
	건축감리비	식	1	168,000	168,000
	내진보강구조감리비	식	1	5,000	5,000
	전기감리비	식	1	34,650	34,650
	소방,통신감리비	식	1	17,850	17,850
	석면감리비	식	1	8,400	8,400
	에너지등급수수료	식	1	25,000	25,000
	설계안전성검토비	식	1	15,000	15,000
	시설부대비	식	1	10,886	10,886
	소 계				695,339
합 계					8,238,003

◦ 사업규모

- 건물(증축) 1,548㎡

- 주요(부대)시설: 사무실 3실, 학교폭력심의회실 및 상담실 3실, 대회의실 3실, 화장실 3.5실, 창고 1실, 휴게실 2실 등

※ 건물(보수) 972.89㎡

- 청사 리모델링내역: 이중창 교체,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 석면 교체

◦ 기준가격: 8,238,003천원

- 건물 8,238,003천원

◦ 계약방법: 건물 - 일반경쟁입찰

3. 처분대상 재산 목록

(단위: m², 천원)

재 산 의 표 시				처분금액 (대장가격)	처분 시기	처 분 사 유	비고
기관명	소재지	구분	수량				
상 촌 초 대 해 폐 교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698외	토 지	9,426.00	41,340	2023. 하반기	영동군에서 백두대간 산촌 문화보전 및 계승을 위한 산촌문화마을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 요청	도면 2
		건 물	769.35	117,401			
		소 계	10,195.35	158,741			
합 계(1)		토 지	9,426.00	41,340			
		건 물	769.35	117,401			
		계	10,195.35	158,741			

①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① 사업위치: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698

② 주요내용

◦ 처분목적: 영동군에서 산촌문화 마을 조성부지로 활용

- 폐교년도: 1991. 3. 1.

◦ 처분용도: 산촌문화마을 조성 부지

◦ 처분기간: 2023년도 하반기

◦ 처분금액(대장가격): 158,741천원

※ 참고사항: 탁상감정금액 634,114천원(토지 391,242천원, 건물 242,872천원)

◦ 처분규모: 토지 5필지 9,426m², 건물 9동 769.35m²

◦ 기준가격: 209,742천원

- 토지(공시지가) 126,830천원, 건물(시가표준액) 82,912천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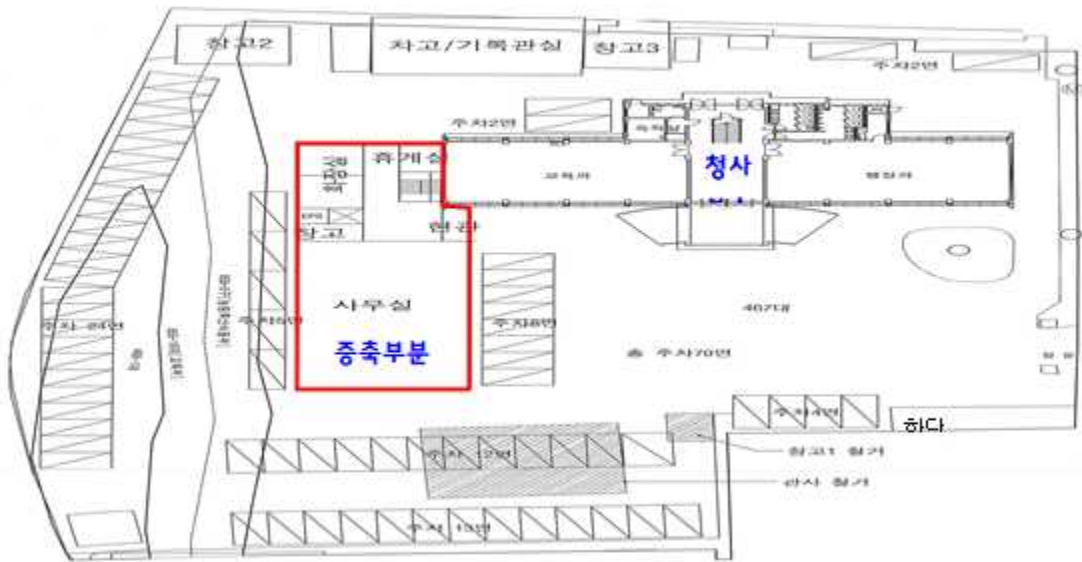
도면 1.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위치도

(단위: m²,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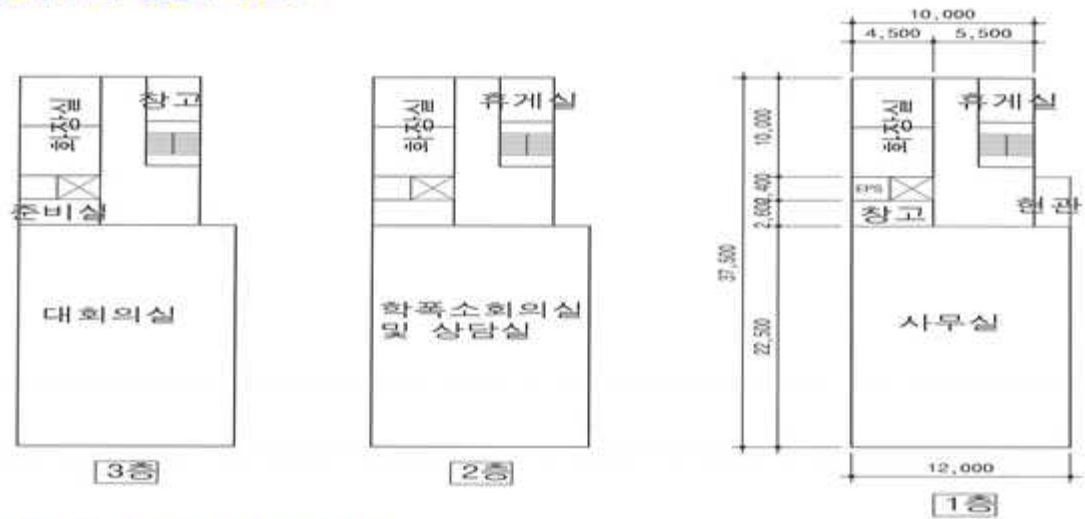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수량	취득금액	사 유
음성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보수	건물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467	철·콘조	1,548.00	8,238,003	사무 및 회의공간 확보를 위한 청사 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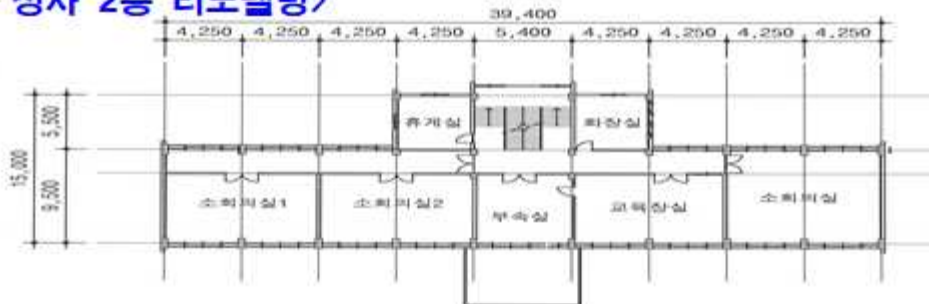
<음성교육지원청 배치계획(안)>



<중축부분 층별 구조>



<기존 청사 2층 리모델링>



도면 2.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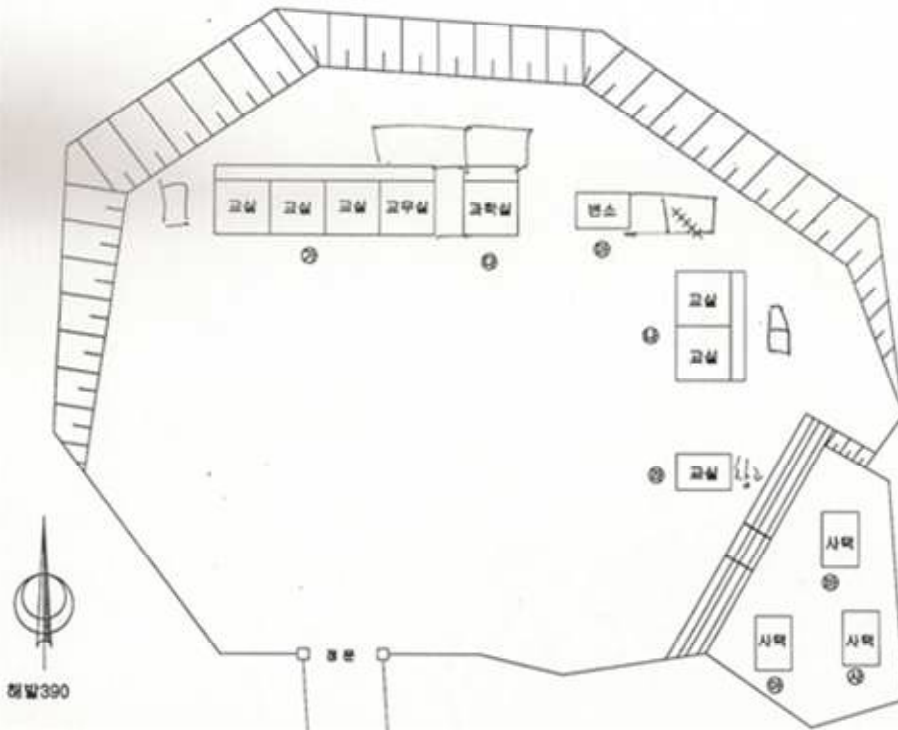
(단위: m², 천원)

건 명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구조	수량	처분금액 (대장가액)	사 유
상촌초 대해폐교 처분	토지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690-5	토지 답	531.00	1,813	영동군에서 백두 대간 산촌문화 보전 및 계승을 위한 산촌문화마을 조성 부지로 활용하고자 매각 요청
			692	전	3,470.00	12,214	
			697	대	436.00	2,136	
			698	학교용지	4,297.00	21,786	
			703	대	692.00	3,391	
			계	5필지	9,426.00	41,340	
	건물	영동군 상촌면 대해리	교사	건물 철·콘·조	330.50	65,106	
			교사	시·벽·스	82.65	9,927	
			교사	시·벽·스	165.20	6,934	
			창고	시·벽·스	27.00	220	
			화장실	벽·조	31.00	6,020	
			사택	시·벽·스	29.70	3,767	
			사택	시·벽·스	29.70	1,370	
			사택	시·벽·스	26.40	1,923	
			교사	목조	47.20	22,134	
			계	9동	769.35	117,401	
			계				



학교시설 배치도

폐교명 : 상촌초 대해본교



대 조 표				
건물 번호	건축 년도	구 조	주 용 도	면 적 (㎡)
㉠	76	물건보관용 소강당	교실	330.5
㉡	69	시정리 박물관 소강당	교실	165.2
㉢	68	시정리 박물관 소강당	교실	82.65
㉣	76	시정리 박물관 소강당	창고	27
㉤	82	주변용 소강당	변소	31
㉥	70	시정리 박물관 소강당	사택	29.7
㉦	74	시정리 박물관 소강당	사택	26.4
㉧	72	시정리 박물관 소강당	사택	29.7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가목·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 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隣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 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 라. 삭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13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 연도 예산의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
 -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